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1가합107198 판결 [계약금 반환 등 청구]

---

##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한무, 유광후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이진우

변 론 종 결 2023. 7. 14.

판 결 선 고 2023. 9. 22.

##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3.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A에게 195,298,310원 이에 대하여 2021. 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다이어트 및 비만관련 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E'이라는 브랜드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던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원고 A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연인이다.

나. 원고 A는 2020. 12. 10.경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0. 12. 13. 피고 회사의 '회장' F('G'이라는 통명을 사용하였다)의 남편 H 명의의 계좌로 가맹금으로 56,5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I, J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K건물 L호, M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1. 1. 20.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① F의 동생이 이 사건 상가건물 인근에서 피고 회사의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N'로 상호를 변경하여 유사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②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항의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 A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 D도 원고 A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른 후 원고 A를 상담실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손으로 원고 A의 왼쪽 어깨와 목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D는 서로를 고소하였는데, 피고 D에 대하여는 원고 A에 대한 폭행이 인정되어 2022. 7. 21.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6238호)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D의 원고 B에 대한 폭행 및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폭행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2. 6. 16. 원고 A에게 가맹금 56,5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원고 A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17, 18, 39, 43, 4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8,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피고들이 ① 이 사건 상가건물 인근에서 F의 동생이 ‘N’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② 예상매출액에 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였으며, ③ 정보공개서도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및 공사비용으로 합계 195,298,31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95,298,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금 56,500,000원을 반환하였고,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지출하였다는 인테리어 및 공사비용이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가 주장하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 나. 피고 D의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D가 2021. 1. 20. 원고 A의 어깨와 목살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피고 D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폭행의 경위,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로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2.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원고 B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곤, 판사 현재언, 판사 유정화